**대리점 용역 약정서**

서광티씨디 주식회사(이하 ”갑”)와 주식회사 피에스에이치홀딩스(이하“을”)는 덴탈마스크 및 KF94 생산”(이하 “본 계약서” 라 한다)을 위한 바이어 유치 및 공장유치 계약에 따르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**제1조 (약정의 목적)**

본 약정은 “갑”의 마스크 발주(Order)[(이하 “서광티씨티 주식회사”의 “발주량”을 말한다)와 마스크 생산용 완제품의 생산공급 역할을 위한 “을” 주식회사 피에스에이치홀딩스와 대리점용역을 통한 용역업무인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통한 마스크 생산공장과의 운용역할을 통합하여 대리점을 통한 용역을 제공 함으로써 “덴탈 및 KF94마스크 임가공, 완제품 가공”에 따른 수익의 일부분을 용역 금액으로 지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역할)**

본 약정의 "갑"과 "을"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행한다.

1."갑"의 역할

1. "갑"은 발주 약정서에 의한 기간 동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order를 지속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2. "갑"은 제품생산을 위한 본 계약 준비 및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3. "갑"은 발주 약정서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오더를 제공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4. "갑"은 본 약정에 따른 원청(order)과 협의한 가공비를 지급하도록 한다.

2. “을”의 역할

1. “을”은 수탁자(이하, “임가공생산 본 계약자” 라 한다)라 한다.
2.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시하는 바이어 조건에 맞는 공장에 대해 “을”은 필요한 공장 정보, 현장 사진 및 영상, 인증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.
3. “을”은 “갑” 과 연관된 제3자[바이어 등]“와 ‘갑’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해서는 아니 된다. 즉 “을”은 “갑”의 관련 바이어를 직접 교섭하고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일금 오십억 원정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지불 하도록 한다.
4. “을”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한다.
5. “을”은 대리점용역자에게 본 계약서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로자(수수료 수급해당자 법인 또는 개인)에게 본 계약 약정기간 동안 지급한다.
6. "을"은 계약수량에 대해 생산을 통한 생산계획을 바이어와 “갑”에게 제출한다.
7. ”을”은 완제품 가공계약(“이하 본 계약)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될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이 체결한 대리점용역계약은 자동승계 된다.

**제3조 (비용의 지급)**

1. 원청으로부터 발주되는 마스크 가격의 수수료를 지급한다,
2. KF94 300억장, 300대공장 460-20
3. 덴탈 300억장 300대공장 80-10

단, 상기 단가는 3개월 기준 합의 조정이 가능하다

1. 7년 장기계약
2. 원청(바이어)에 납품하는 수량을 “을”이 “바이어’에게 서면으로 제출 또는 출고 즉시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수량에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
3. 지급의 시기는 원청의 임가공 본 계약에 따라 동일하게 일주일단위 분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
단, 지급하는 날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.

**제4조 (대행 수수료 및 용역료)**

“을”은 마스크 생산, 판매를 위한 제3자(마스크 구매자 Buyer)와 계약이 체결된 후 “을”이 마스크를 판매(생산)할 경우 “갑”에게 대리점 용역료를 지급한다. (지급방법은 바이어 오더별 용역료 기준에 맞게 배분한다. 세부사항은 특약사항 및 용역계약으로 첨부자료 참조)

**제5조 (약정기간)**

본 약정의 기간은 원청 회사인 바이어와 본 계약서 계약기간의 약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(단, 본계약이 기타사정(변경, 변동)에 의하여 변경 되더라도 본 독점적 대리점 용역계약, 약정기간,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동승계 된다.

**제6조 (영업양도 및 전대금지)**

“갑” 과 “을”은 상호 동의 없이 영업의 양도, 전대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상호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**제7조 (비밀유지의 의무)**

“갑” 과 ”을”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호간의 모든 영업상의 기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,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
**제8조(일반사항)**

1. 본 약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 것이다.
2. 본 약정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.

당사자가 본 합의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는 해당 권리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으며, 당사자가 본 협의상 특정 조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는 다른 조항에 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고, 그 후의 권리 행사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
1. 본 약정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정상 지위 및 본 약정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담보제공, 이전 등 처분할 수 없다.
2. 본 약정서의 어느 규정(문장, 문구 또는 그 일부를 포함)이 무효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의 효력 또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무효인 조항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조항은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더라도 최대한 동일한 효력과 집행가능성이 인정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.
3. 본 약정서에 기인한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으로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의한다.

**제9조(특약사항)**

“갑”과 “을”은 마스크 제품생산 약정기간, 수량, 단가, 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한다. 기타 자세한 특약내용이 있는 경우 약정하기로 하고 본 약정 내용과 상충 될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.

1)

2)

3)

1. 대리점 용역자(공로자) 명부 1부
2. 본계약서 사본 1부,
3. 인감 증명서 각 1부
4.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끝.

2021. 2 . 5 .

**(“갑”)**

회 사 명 : 서광티씨디주식회사 ( 사업자등록번호 131-86-66445 )

주 소 :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13-1,903호(대야동, 월드프라자)

대표이사 : 김 정 수 ( 인 )

**(“을”)**

회 사 명 : 주식회사 피에스에이치홀딩스 ( 사업자등록번호 286 - 87- 01583 )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7 교보증권빌딩 10층  
1공장주소 :

대표이사1 : 박 강 원 ( 인 )